

Q

당사는 턴키방식으로 기전설비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포괄적인 계약금액을 대상액으로 품목별·공정별 세부 항목에 대해 계약서에 미리 정해 놓은 기성율표를 사용해 산출한 공사기성금을 매 2개월마다 정산하여 지급받고 있는데, 그 정산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안전관리비는 선급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목적에 맞게 실제로 사용한 비용을 발주자가 실비변상하는 것이므로 안전관리비를 공사기성율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계약자가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또한 같은 서류를 공사현장에 상시 보관한다는 전제 아래, 안전관리비의 기성금 지급방법에 관해 계약서에 달리 정한 것이 없다면, 안전관리비 총액에 공사기성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안전관리비 기성금 명목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하다.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사용 및 계상에 대하여는 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7.22)에 의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고 그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공사 수급인이 공사를 수행하면서 산업재해예방과 건강장해예방사업에 사용하고 그 내역을 1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급인이 사용하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발주자는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선급여부나 정산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양 당사자간 약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이나 정산방법은 일반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등은 내역서나 임금대장 등으로 증빙이 가능하고, 기타 구입안전장구는 세금계산서나 구입전표 등 객관적으로 구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증빙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A

Q

제가 관리하고 있는 위험물(유류)수송차량에 대한 비치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물품을 구비해야 하며, 그에 대한 법적 근거를 알려주십시오.

산업안전보건법상 유류수송차량에 대한 비치품은 별도로 정함이 없습니다. 다만 등유나 경유는 주입전에 탱크로리·드럼 등과 주입설비 사이에 접속선 또는 접지선을 연결하여 전위차를 줄이도록 되어 있고, 그 액표면의 높이가 주입관의 선단의 높이를 넘을 때까지 주입속도를 매초당 1m 이하로 해야 하며, 취급장소에는 적절한 소화설비를 비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A



Web Hard(대용량 파일저장 서비스)에 가입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활용할 경우 Web Hard 사용료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근무중인 현장에서는 Web Hard를 업무에 많이 활용합니다. 다량·다수의 파일을 송부하는데 있어서 일반 메일에 비해 업무효율이 높고, 안전업무 중에 각종 사진, 일보 등을 파일 형식으로 주고받고 있으며, 공문의 경우에서도 정식 문서와 함께 파일을 같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매우 유용합니다.

그런데 다른 곳으로 근무처를 옮겼을 경우, 그 현장에서 따로 Web Hard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제 이름(또는 기업이나 현장)으로 가입해 안전업무에 활용하고 싶은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겠는지요?

- Web Hard를 사용할 때 안전관련 업무로만 활용
- 세금계산서, 영수증 첨부
- 월단위로 정액 사용

질의내용으로 보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업장에서 안전과 관련된 장비구입 및 동업무를 추진하는 경우에 사용토록 되어 있는바, 귀하가 동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용코자 한다면 이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물류업을 하고 있는 회사의 물류센터입니다.

저희 사업장에는 당사업장 외에 배송 및 적재하역을 책임지고 있는 협력업체(A사)와 운송을 담당하는 별도 법인의 운송회사(B사)가 같은 울타리 안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당사 근로자는 5명, 협력업체(A사)는 38명, 운송회사 관리직 4명(나머지는 지입차주임)이 근무하는데, A사는 안전관리대행을 하고 있고, B사는 교육 및 점검 등 안전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안전교육 및 점검 등 안전관리활동의 주체나 관리책임한계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주체는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가 되며,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건설업과 제1차 금속산업, 선박 및 보트건조업, 토사석 광업, 제조업 등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